

대법원 2024도4824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보도자료

대법원 공보연구관실(02-3480-1895)

피고인 1은 천안시장으로서 2022. 6. 1. 실시된 천안시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 피고인 2는 천안시장 비서팀장, 피고인 3, 4는 천안시 미디어홍보팀 소속 주무관, 피고인 5는 피고인 1의 선거캠프 정책팀장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① 피고인 1, 2, 3, 4는 공무원 지위 이용 선거운동 기획참여 등 및 선거운동, ② 피고인 1, 2, 5는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③ 피고인 5는 당내경선운동방법 제한 위반으로 인한 각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임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① 피고인 1에 대한 ②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1에게 허위사실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없으므로, 이와 달리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허위사실공표죄에서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② 피고인 2~5에 대하여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고 피고인 2~5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음(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4도4824 판결)

1. 사안의 개요

가. 피고인들의 지위

- ▣ 피고인 1 ⇒ 천안시장으로서 2022. 6. 1. 실시된 천안시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
- ▣ 피고인 2 ⇒ 천안시장 비서팀장

▣ 피고인 3, 4 ⇒ 천안시 미디어홍보팀 소속 주무관

▣ 피고인 5 ⇒ 피고인 1의 선거캠프 정책팀장

나. 공소사실의 요지

▣ ① 공무원 지위 이용 선거운동 기획참여 등 및 선거운동

- ① 피고인 2는 공약개발 및 업적 정리 관련하여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함
- ② 선거홍보 영상물 '기가도니' 콘텐츠 제작 및 게시 관련하여, 피고인 1~4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고, 피고인 1~3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함
- ③ 피고인 2, 4는 카드뉴스 '왕시리즈' 제작 및 배포 관련하여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함
- ④ 피고인 2, 4는 예비후보자 홍보물 작성 관련하여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함
- ⑤ 피고인 2는 책자형 선거공보물 작성 관련하여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함

▣ ②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 피고인 1, 2, 5는 피고인 1이 천안시장에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예비후보자 홍보물과 책자형 선거공보물에 천안시 고용률과 실업률 통계를 인용하면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기준을 누락하고 '고용률 63.8%(전국 2위), 실업률 2.4%(전국 최저)'로 기재함으로써 피고인 1의 업적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함

▣ ③ 당내경선운동방법 제한 위반

- 피고인 5는 피고인 1이 국민의힘 천안시장 후보자로 공천되게 할 목적으로 공직선거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당내경선운동을 함

2. 소송경과

가. 1심 ➡ ①-② 및 ② 부분 무죄, 나머지 유죄[피고인 2: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4: 벌금 500만 원, 피고인 5: 벌금 400만 원]

▣ ①-② 무죄 이유

- 제1차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따라 압수된 '기가도니' 관련 전자정보는 제1차 압수수색영장 기재 혐의사실(②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혐의)과 관련성이 없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 이를 기초로 획득된 2차적 증거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음
- 나머지 증거로는 증명이 부족함

▣ ② 부분 무죄 이유

- 중소 규모의 시, 군 구까지 포함하면 천안시의 2021년 하반기 고용률은 전국 공동 86위, 실업률은 전국 공동 111위에 불과하여 '전국 2위, 전국 최저'라는 표현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으나, 피고인 1, 2, 5에게 허위사실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움

나. 원심 ➡ 전부 유죄[피고인 1, 2: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3, 4: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5: 벌금 700만 원]

▣ ①-② 유죄 이유

- '기가도니' 관련 전자정보와 제1차 압수수색영장 기재 혐의사실 사이의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기가도니' 관련 전자정보 및 이를 기초로 획득된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함

▣ ② 부분 유죄 이유

- '고용률과 실업률' 기재는 허위사실에 해당함(= 제1심)
- 피고인 2, 5에게 허위사실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음
 - 피고인 2, 5는 홍보물과 공보물의 기획, 제작, 편집을 직접 수행함

- 피고인 1에게 허위사실에 대한 미필적 고의도 인정할 수 있음
 - 피고인 1은 홍보물과 공보물을 보고도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 기준이 누락되어 있는 것을 전혀 파악하지 못함
 - 피고인 1은 홍보물과 공보물 중 자신의 업적과 성과 부분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고, 피고인 2, 5에게도 사실 확인·조사를 위한 지시를 하지 않음
 - 피고인 1이 홍보물과 공보물을 통하여 공표하고자 하는 사실이 진실인지 확인·조사할 의무를 소홀히 한 이상, 그로 인한 책임은 피고인 1에게 돌아감

3. 대법원의 판단

가. 쟁점

- ▣ 압수수색영장의 혐의사실과 압수된 전자정보의 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 ▣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및 '공무원 지위 이용' 해당 여부
- ▣ 허위사실공표죄에서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

나. 판결 결과

- ▣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 파기·환송
- ▣ 피고인 2~5의 상고를 모두 기각

다. 판단 내용

- ▣ 피고인 1, 2, 5의 ②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부분
 -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 **긍정**
 - 홍보물과 공보물에 천안시 고용률, 실업률에 관한 문구를 기재하면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기준을 누락하고 '전국'이라는 기준만 기재한 것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음
 - 미필적 고의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의 인식이 필요한데,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허위사실공표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됨.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므로,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없음**

● 피고인 2, 5의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 ➡ **긍정**

-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음

● 피고인 1의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 ➡ **부정**

- 피고인 1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피고인 1이 홍보물과 공보물에 대도시 기준이 누락되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어야 하고, 이를 모르고 있었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으므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없음
- 원심은 피고인 1이 홍보물과 공보물을 통하여 공표하고자 하는 사실이 진실인지에 대하여 확인·조사할 의무를 소홀히 하였으므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는 고의범이므로, 피고인 1이 홍보물과 공보물에 대도시 기준이 누락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음 ⇒ 원심의 판단은 허위사실공표죄를 사실상 과실범으로 취급한 것과 다를 바 없어 타당하지 않음

■ 나머지 부분

- 피고인들에 대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

나 압수수색에서 객관적 관련성과 증거능력,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공직선거법 제85조 제2항 및 제86조 제1항 제2호의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공직선거법 제85조 제2항 위반죄 및 제86조 제1항 제2호 위반죄의 죄수관계, 공판중심주의 및 직접심리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증거조사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거나 수사단계에서 사건수리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음

▣ 파기범위

-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㉔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원심은 이 부분과 경합범 관계에 있는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은 모두 파기되어야 함

4. 판결의 의의

- ▣ 대법원은 허위사실공표죄에서 허위사실에 대한 미필적 고의에 관하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함